

(붙임 1)

## 「국고금 취급절차」 주요 개정내용

### I 개정 필요성

- 효율적인 국고금 수급관리 및 안정적인 국고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고업무를 총괄하는 “국고업무 주관부서”를 지정·운영\*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시할 필요

\* 「금융기관 국고업무 주관부서 운영 필요성 검토결과 보고」(국고팀-3134, 실장, 2020.12.28)

- 국고업무 주관부서 지정·운영을 통해 당행과 금융기관간 연락창구를 일원화하고 국고업무 주관부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기관 국고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제고

- 인터넷 전문은행,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은행\*이 당행과 국고금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금수납사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

\*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은행

-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되어 국고금수납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
  - ① 당행과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데 필요한 절차와
  - ② 해당 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

### II 주요 개정 내용

- ① 국고업무 주관부서 관련 조항 신설

- 국고업무 주관부서의 역할을 정의(제2조제8호)하고 금융기관의 국고업무

주관부서 지정·운영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를 명시(제7조제1항 및 제3항)

- 국고업무 주관부서는 국고대리점의 설치, 업무지도, 사고보고, 국고전산망 운영 등 국고업무 전반을 총괄(제7조제2항)

## ② 은행의 국고금수납점 지정 관련 조항 및 서식 추가

□ 은행의 국고금수납점 지정 시 적용조항 신설

-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**은행이 수납한 국고금**은 중앙회 등이 수납한 국고금과 **별도로 당행과 직접 결제**

- 자체 업무지도, 사고 보고 및 제재, 잔액 대조·확인, 수납자금 결제, 조기결제 조항 적용 시에는 국고금수납점인 은행을 중앙회 등과는 **별개의 금융기관으로 취급**(제113조)

□ 은행의 국고금수납점 지정 시 이용되는 **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** (별지 제2-2호 서식) 및 **국고금수납점계약서**(별지 제 4-2호 서식)를 **신설**

## ③ 기타 조문 정비

□ 시스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송수신 전문을 일부 수정

- 재처리의뢰 전문의 송신 주체를 당행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, 장려금 지급 업무 관련 송수신 전문 추가

## Ⅲ 시행일

---

□ 시행일 : 2021. 6. 15.